

##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글로벌K-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 운영규정

제정 : 2023.11.20.

시행 : 2023.11.30.

개정 : 2025.03.14.

개정 : 2026.04.06.

### 제1장 총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교육부 주관 하에 한국연구재단이 시행하는 「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」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설립되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「글로벌K-컬처 선도융합인재양성사업단」(이하 “사업단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. 다만, 한국연구재단 또는 사업 컨소시엄(주관대학, 참여대학)의 사업 규정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.

**제3조(사업 및 역할)**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업 컨소시엄과 연계 및 협력
2. 교육과정 및 교과목의 구성 및 관리
3. 교육콘텐츠 및 교육인프라의 구축 및 관리
4. 학사제도 개선 제안
5. 교원 및 학생의 참여 지원 및 홍보
6. 그 밖의 사업단 설치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### 제2장 사업운영

**제4조(목적)** ① 국내 5개 대학(주관대학 1개, 참여대학 4개)이 컨소시엄 형태로 협력하여 지역소멸의 위기를 지역상생의 기회로 전환하고, 인문적 통찰과 예술적 표현의 융합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며,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의 진로개척을 지원한다.

② 각 대학은 K-컬처의 각 분야를 선도하는 대학으로, 각자 특성화된 영역의 교육역량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한다.

③ 교육과정 도입을 통한 혁신(교육과정 혁신, 교육방법 혁신, 교육인프라 혁신)을 추구한다.

- 교육과정 혁신: 글로벌 K-웨이브(캐치웨이브-기초소양 교육과정, 로그웨이브-심화/융합 교육과정), 테이크오프(비교과 프로그램) 개발
- 교육방법 혁신: 점프스루 교육법(강의형, 협력형, 문제해결형 교육방법) 도입
- 교육인프라 혁신: 초연결형 We러닝(디지털 인프라, 물리적 인프라, 인재 역량 공유) 형성

**제5조(기간)** ① 사업기간은 2023.07.01.~2029.02.28.로 총 68개월간 진행한다. 다만,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②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사업기간을 소급, 단

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.

② 사업계획의 교육모델 운영 추진 로드맵에 따라 1단계(2023-2025학년도), 2단계(2026-2028학년도)로 구분한다.

### 제3장 학사제도

**제6조(목적)** ① 컨소시엄 전용 올인원(All-in-One) 학사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,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초유연 학사제도를 추진한다.

② 사업계획에 따른 학사제도의 편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.

**제7조(기준)** ① 사업 진행에 필요한 학위(인증)를 도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.

② 사업에 포함되는 학위(인증)는 다음과 같다. 각 학위(인증) 수여에 필요한 학점은 본 운영규정을 기준으로 하며, 각 학위(인증)는 요구하는 이수체계에 따라 교과목을 이수하여야 한다.

- 마이크로디그리(인증): 총 12학점 이상

- 부전공(학위): 총 21학점 이상

- 복수전공(학위): 총 36학점 이상

③ 각 학위(부전공, 복수전공) 과정을 수료하면 학위증에 명시하고, 인증(마이크로디그리) 과정을 수료하면 인증서를 발급한다. 각 학위(인증)의 전공명은 사업단 교육과정 관련 지침에 근거하여 표기한다.

**제8조(교과목 편성)** ① 교과목의 편성 및 과정이수는 사업단 교육과정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② 우리대학의 학칙과 컨소시엄 사업단의 운영규정 간 기준이 다른 경우, 컨소시엄 사업단의 운영규정을 우선으로 한다.

### 제4장 사업단

**제9조(구성)** ①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및 사업운영팀을 둔다.

② 사업단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며, 사업 전반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③ 사업운영팀은 사업 전반의 행정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.

**제10조(기능)** 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사업 컨소시엄과의 연계 및 협력

2. 분야별 사업단 성과 관리

3. 교육과정 및 교과목 구성 및 관리

4. 교육콘텐츠 및 교육인프라 구축 및 관리

5. 학사제도 개선 제안

**제11조(산학협력중점교원 및 겸임교원 등)** ①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에 산학협력 중점교원, 겸임교원, 연구교원을 둘 수 있고, 자문 등을 위한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.

② 산학협력중점교원, 겸임교원, 연구교원, 외부전문가는 사업단에서 수행하는 각 사업에 참여할 자로 한다.

**제12조(사업관리위원회)** ① 사업계획 수립 및 변경 등의 중요 사안 검토 및 자문을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둔다.

②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사업 참여교원으로 한다.

**제13조(운영위원회)** ① 위원장은 사업단장으로 하며, 위원은 사업 참여교원 및 사업운영팀 교직원  
으로 한다. 단, 필요에 의해 TF 팀장 및 관련 교직원, 산업체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.

② 사업단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사업 전반에 관한 정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
2. 사업단 운영을 위한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 발의
3. 사업 예산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
4. 연구지원 및 성과평가 심의
5. 기타 사업 전반에 관한 필요사항

**제14조(교육과정심의위원회)** <삭제>

**제15조(자체평가위원회)** ① 사업단의 전반적인 성과평가, 확산, 환류를 위하여 컨소시엄 사업단 자  
체평가위원회를 둔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사업운영팀, 성과관리센터장, 교육과정혁신센  
터장으로 구성하며, 사업 참여교원 및 산업체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.

## 제5장 재정 및 예산·결산

**제16조(재정)** ① 사업단의 재정은 국고보조금 및 교비 등으로 운영한다.

② 사업비의 재정 및 관리는 국고사업 집행기준을 따르며 기타 세부사항은 컨소시엄 사업단 집  
행기준을 따르고, 사업단 집행기준이 없는 항목은 대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.11.30.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 
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5.03.14.부터 개정 시행한다.

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.04.16.부터 시행한다.